

## 개발부담금 산정 등에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 제5항, 제22조의2제1항 및 제24조제4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등을 산정할 때에 적용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 이자율) 「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조제5항에 따른 정상지가상승분, 영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부담금 환급액, 영 제24조제4항에 따른 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에 따른 가산금의 산정을 위해 적용하는 이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영 제2조제5항에 따른 정상지가상승분의 산정을 위한 “정기예금 이자율”: 연 1천분의 25
2. 영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에 따른 부담금 환급액의 산정을 위한 “요율”: 연 1천분의 25
3. 영 제24조제4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납부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따른 가산금의 산정을 위한 “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한 이자율”: 연 1천분의 31

제3조(적용기간) 제2조에 따른 적용 이자율은 2026년 7월 1일부터

2027년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.

## 부 칙

이 고시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